



Web Contents



2024년 04월 27일 04시 28분

상수도요금안내	하수도요금안내	수질검사결과	정수장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항목해설	상수도현황	하수도현황	수돗물아껴쓰기
민원도우미	수질검사관련법규	하수도원가정보공개	관련동영상
자료방			

목포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2020.12.21 조회수 391 등록자 김채린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20.11.2. ~ 2021.5.3. (6개월)
2.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제 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 가. 신고기관 :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하수와 지하수 담당(☎ 061-270-8519)
 - 나. 신고서류 : 불임참조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hwp (328 hit/ 21.5 KB) 미리보기
-------------------------------------	--

목록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서식] -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및 변경설치...

MokPo - Si
Web Contents

